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8. 12. 1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2018년 12월 10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자동실효(2020.7.1부터)와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해제 추진 및 존치시설에 대하여 자동실효를 대비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 대상시설 현황 : 총 17건(구 설치의무시설, 2018. 10월기준)

구분	합계	장기미집행		
		소계	도로	공원
건수	17	17	13	4
면적(m ²)	271,787	271,787	113,911	157,876
사업비(억원)	2,050	2,050	590	1,460
보상비(억원)	1,938	1,938	548	1,390

2) 사업부서의 해당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

구분	합계	존치 시설			해제 시설	
		소계	도로 (장기)	공원 (장기)	소계	도로 (장기)
건수	17	14	10	4	3	3
면적(m ²)	271,787	261,787	103,911	157,876	10,000	10,000
사업비(억원)	2,050	2,050	590	1,460	-	-
보상비(억원)	1,938	1,938	548	1,390	-	-

※ 도로(토목과) : 도로의 연계성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없는 3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검토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준호)

-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
- 현재 마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3개소, 공원 4개소, 총 17개소로서 추정사업비가 2,050억원임.

- 의견청취 내용은 총 17개소 중 3개소(도로 3)는 해제하고 14개소(도로 10, 공원 4)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해제 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및 비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야 하나, 금번 해제 대상 시설은 장래계획 미도래 및 이용자 저조, 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중복 및 현재 도로기능의 문제가 없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사유로 해제하고자 하는 것임.
- 존치 시설의 경우 구민의 생활환경에 필요한 교통, 휴식공간 등의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사유로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된다는 점에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